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158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E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여주시 G 임야 396㎡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F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와 2022. 12. 29. 접수 제41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김동석

별지